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다올투자증권㈜

2. 조치일 : 2026. 9. 17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2건, 개선사항 1건
임 원	해당사항 없음
직 원 등	해당사항 없음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채권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 개선

다올투자증권㈜ 컴플라이언스부서는 내규에 따라 채권 매매 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

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을 동일계좌에서의 거래로 한정하여, 매수한 채권을 타 계좌로 이관하여 매도하는 경우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고, 채권 유형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을 세분화하지 않고 단일기준(금리차 50bp 이상 여부)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낮다.

<조치할 사항>

다올투자증권㈜는 채권의 매수·매도 계좌가 다른 경우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, 채권 유형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

(2) 채권 브로커 성과보수 체계 개선

다올투자증권㈜ 경영기획팀은 채권 중개업무 수행 임직원이 분기별 손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도록 성과 보수체계를 마련하였으나,

A 부서 등은 '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'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을 이연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.

<조치할 사항>

다올투자증권㈜는 채권 브로커의 중개 거래로 발생가능한 회사의 부당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, 채권 중개부서 임직원의 경우 연말 계약기간 종료 이후 성과보수를 확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개선사항

(1) 채권 거래기록 관리 불철저

투자매매업자 등은 채권 장외거래 호가정보를 서면, 전산자료 등 형태로 3년이상 기록·유지해야 함에도

다올투자증권㈜는 거래체결과정에서 휴대폰, 외부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협의 후 K-Bond에는 체결내역만을 기재하였다.

<조치할 사항>

다올투자증권㈜는 회사가 인정하는 통신장비, K-Bond 등을 사용하여 매매물건 탐색, 가격협의과정 등 호가정보를 기록·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
< 관련법규 >

1.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5-9조